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「협동조합 특례보증」취급기준 개정(안)

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취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1. 개정근기

- 중소기업청의「협동조합 특례보증 시행지침 개정 알림」 (기업금융과-358, '16.4.14.)
-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「협동조합 특례보증 시행기준 개정·시행 알림」 (보증 2016-9045, '16.4.19.)

2. 주요 개정내용

대상기업	구 분	변경전	변경후
이끄는 사건 길기		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협동조합 *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	중소기업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 조합연합회,사회적협동조합,

3. 시행일 : 2016년 6월 1일(수) (신청서 접수일 기준)

붙 임 : 1. 「협동조합 특례보증」취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.

- 2.「협동조합 특례보증」취급기준 개정前 전문 1부.
- 3.「협동조합 특례보증」취급기준 개정後 전문 1부. 끝.

과장 팀장 부장 이사장

협조자 전략기획실장

시행 보증지원부-331 (2016.06.02.) 접수 ()

우 0413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17층 /http://www.seoulshinbo.co.kr 전화 / 02-2174-5212 /전송 02-3278-8117 /pym1222@seoulshinbo.co.kr / 공개